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943
----------	-------

발의연월일 : 2025. 12. 5.

발 의 자 : 허영 · 박정현 · 박지혜
김태선 · 박용갑 · 이강일
박균택 · 한민수 · 소병훈
김영환 · 박수현 · 박상혁
서미화 · 이훈기 · 김상욱
박지원 · 허성무 · 김 윤
최혁진 · 이해식 · 정진욱
이주희 · 박해철 · 전용기
박선원 · 최민희 · 윤종균
맹성규 · 김원이 · 박 정
김준혁 · 서영교 · 조계원
의원(33인)

제안이유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22년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에 대하여
직권조사 결정을 내렸고, 진실규명과 함께 국가에 직권재심을 권고한
바 있음.

3천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납북귀환어부들은 어업을 하다가 납
치된 피해자였지만, 귀환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 불법수사를 받고 간첩이라는 의혹 속에서 수십 년간 감시와 사찰을 받는 등 치유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음.

이에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납북귀환어부들이 입은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 및 명예회복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납북귀환어부 및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하여 처벌하거나 인권을 침해한 사건을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으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납북귀환어부 가족 및 친족으로서 연좌제 등으로 진학과 취업 등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한 사람 등을 피해자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명예회복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1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피해자·유족의 심사·결정,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함(안 제5조).

- 라. 납북귀환어부 및 가족 등은 위원회에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진상규명 신고를 할 수 있음(안 제8조).
- 마. 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가 완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상규명 조사보고서를 작성·발간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13조).
- 바.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피해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피해자의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음(안 제15조).
- 사. 국가는 피해자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 아. 진상규명 결정,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음(안 제20조).
-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및 유족의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트라우마 치유사업, 기념사업, 피해자 단체 등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부터 28조까지).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북어부”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동·서해상에서 조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포, 조난, 표류 등으로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들어가게 되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체류하게 된 사람을 말한다.
2. “남북귀환어부”란 북한을 벗어나 남한으로 귀환한 남북어부를 말한다.
3.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이란 남북귀환어부 및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하여 처벌하거나 인권을 침해한 사건을 말한다.

4.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5조에 따른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자를 말한다.

가.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나.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다.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라.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과 관련하여 수배·연행 또는 구금되었던 사람

마.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과 관련하여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바.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과 관련하여 나포, 조난, 표류 등을 당한 선박의 소유자·관리자·운영자(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로서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추징당하는 등 유·무형의 경제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사. 남북귀환어부 당사자 또는 가족, 친족으로서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과 관련하여 법에 근거하지 않은 감시와 사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아. 남북귀환어부의 가족, 친족으로서 연좌제와 신원조회 등으로 진학과 취업 등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입은 사람

5. “유족”이란 피해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피해자와 유족의 권리) 피해자와 유족은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의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 명예회복 및 보상, 기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화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민화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명예회복 위원회 등

제5조(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명예회복 위원회) ①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피해자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명예회복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
2. 피해자·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3. 피해자·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4. 진상규명 조사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통일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피해자 및 유족 대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심의·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⑦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⑧ 위원회는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해당 사건의 진상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 ⑨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⑩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활동보호 및 비밀누설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직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불이익 처우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및 유족은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장 진상규명 신고 및 진상규명 조사

제8조(진상규명 신고 및 신고처의 설치) ① 남북귀환어부, 그 가족이나 이들과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진상규명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국내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한 진상규명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신고처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진상규명 신고를 접수하는 때에는 신고 후 절차에 관한 사항과

피해자 및 유족의 권리 등에 대하여 충실히 고지하여야 한다.

④ 진상규명 신고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진상규명 신고의 방법 및 절차와 신고처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정부 및 관계 기관·단체의 협조 의무) ① 정부는 진상규명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다른 국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② 관계 기관 및 단체는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진상규명 조사) ① 위원회는 의결로 진상규명 조사 개시 결정을 하고, 최초 진상규명 조사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진상규명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진상규명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 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4. 관계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④ 제3항제3호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사람,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동행명령) ① 위원회는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의 진실에 관하여 중요한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한다.

1. 대상자의 성명·주거. 다만,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거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2.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3. 동행할 장소

4. 동행명령장 발부연월일

5. 동행명령장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

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6.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

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따라 교도관리가 행한다.

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는 소속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12조(진상규명 결정 등)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 피해자 여부 등 진상규명 조사결과를 의결로써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결과 진실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진상규명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진상규명 결정 또는 제2항에 따른 진상규명 불능결정을 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제8조 제1항에 따른 진상규명 신고인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조사대상자·참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통지대상자에게 이의

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진상규명 조사결과 보고)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진상규명 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이 완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남북 귀환어부 인권침해 진상규명 조사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발간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민화합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발간과 국회 보고 및 공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

제14조(피해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누구든지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의 진상규명 조사결과 및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특별재심 및 직권재심청구의 권고) ① 피해자로서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써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및 제424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③ 재심 청구인이 사면을 받았거나 형이 실효된 경우 재심 관할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중국적 실제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 권고할 수 있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의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보상금) ① 국가는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보상금은 남북귀환어부의 납북기간, 형사절차 중 구금기간, 그 밖에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입은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을 받는 유족은 「민법」의 상속순위에 따른다.

제17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① 국가는 피해자 중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와 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생활보조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금액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① 위원회는 국내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신청·접수할 수 있는 접수처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접수처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생존 여부, 피해자 결정일 등을 고려하여 신청순서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보상금등 지급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지급결정 및 재심의 등) ① 위원회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재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결정전치주의) ① 제12조에 따른 진상규명 결정 또는 진상규명 불능결정과 제19조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신고 및 신청을 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 위원회가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위원회의 결정(재심의 신청에 따른 결정을 포함한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

다.

제21조(형사보상청구의 특례) ① 이 법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에 정한 특례 이외에 형사보상청구 및 지급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른다.

제22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과 관련하여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차감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보상금등의 환수 등) ① 국가는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보상금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4조(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있는 날부

터 확정판결이 있는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제5장 공동체 회복 지원 등

제25조(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트라우마 치유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및 유족에게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으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트라우마 치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기념사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및 유족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추념 행사의 실시
2.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
3. 그 밖의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관련 기념사업

제28조(관련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피해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9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위원회는 이 법에서 정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30조(자격사칭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의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피해자나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3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 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2.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사람

③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3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따르

지 아니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 위원 및 직원의 임명 또는 위촉, 위원회 설립 준비 등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위촉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9271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접수한 사건 중 조사기간의 제한으로 진상규명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하였던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에 대하여 신고인이 재조사를 신청하여 위원회가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진상규명 조사 개시 결정을 할 수 있다.